

서울고등법원 2015. 3. 4 선고 2014나2042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3. 4 선고 2014나204242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2가합2006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 선고 2015. 3. 4.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2가합2006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전 1,448㎡ 토지 중 1,610분의 476 지분에 관하여 2014. 5. 30.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용인시 처인구 C 전 1,448㎡를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D 전 2,034㎡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부분 195㎡에 관하여 2014. 5. 30.

주택지역개발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전 1,448㎡ 토지 중 별지 법원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인접한 선 내 부분 1,048㎡에 관하여 2002. 9. 28.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여부분 토지에 출입하기 위한 폭 4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다. 109,231,92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9,231,920원에 대하여는 판결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 중 방해행위 금지 청구, 처분행위 금지 청구, 처분행위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금전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 중 일부는 청구 인용, 일부는 청구 기각으로 판결을 하였는데,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청구를 인용한 부분만은 주위적 청구로 유지하고, 예비적 청구로 위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민사조정법 제23조 위반 주장 민사조정법 제23조는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심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갑 제6호증)는 위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원고의 주장은 강행법규인 위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확인서(갑 제6호증)의 효력 상실 주장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된 후 제1심에서 최종적으로 2014. 7. 21.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다음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대폭 수정한 새로운 내용의 화해조항을 이메일로 보냈고, 이에 대하여 2014. 7. 31. 원고가 다시 이를 수정한 화해조항을 피고에게 보냈는데, 이것은 종전의 합의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의사표시에서 해당하므로, 이로써 종전 합의서인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인증확인서(갑 제2호증)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인증확인서는 이 피고를 기망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가사 효력이 있더라도 피고가 위 인증확인서의 제1 내지 4항 전단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갈음하여 피고가 및 F에게 제4항 단서에 규정된 1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인증확인서에서 제4항 단서 부분은, 방 1의 권리가 남용된 불공정한 합의여서 무효이고, 가사 무효가 아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여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하며, 위 손해배상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인증확인서에 기한 권리는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서 모두 소멸하였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인증확인서에 담긴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에 관한 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권리의 범위는 원고의 상속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민사조정법 제23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민사조정법 제23조가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갑 제6호증)는 위 규정에서 원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한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하여 청구를 하는 것은 위 규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확인서(갑 제6호증)의 효력 상실 주장에 관하여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고, 조정이 불성립된 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항에 관한 이메일이 오고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효력을 발생한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을 변경 또는 상실시키는 새로운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인증확인서(갑 제2호증)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 사건 확인서(갑 제6호증)를 근거로 한 것인데, 이 사건 확인서가 아닌 이 사건 인증확인서(갑 제2호증)의 무효 여부 등은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가 아닌 이 사건 인증확인서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대웅

판사이현우

판사김동완

별지